5 저작권의 구성 체계

학습목표

- 저작권의 구성 체계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교육부가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갑의 글을 활용하면서 글쓴이의 성명을 다르게 기재하였다.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로맨스 웹소설 작가 을은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자신이 연재하고 있는 유료 웹소설의 복제본임을 알고 게시물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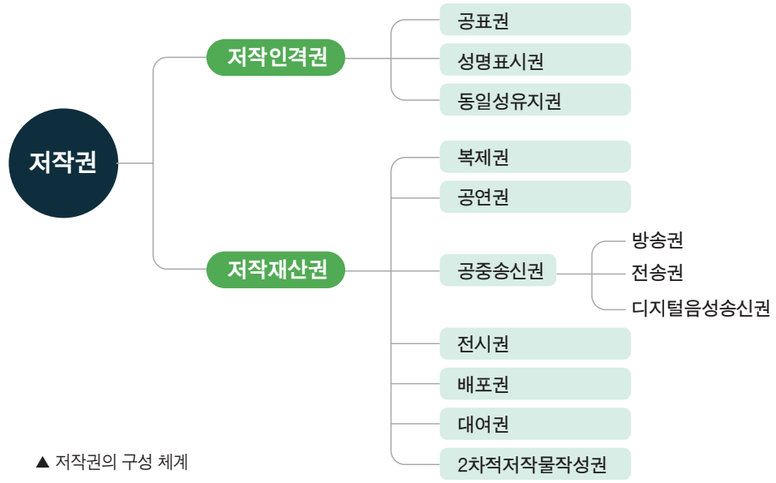


- 두 사례에서 갑과 을은 각각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을까?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 두 사례에서 침해된 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작권의 구성 체계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정신적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재산적 권리이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법적 성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작인격권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인 반면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도
재산,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



▲ 저작권의 구성 체계

저작권 세상 음표 하나를 틀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격적 권리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라는 동요 창작자와 계약을 맺은 A회사는 해당 동요를 비디오물과 CD에 수록하면서 원곡에는 '미'로 되어 있는 8분음표 하나를 '라'로 변경해 수록하였다. 이에 동요 창작자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는 가사부분이 12마디밖에 안되는 아주 짧은 곡일 뿐 아니라 동요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음 하나만 바뀌어도 곡 전체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된다! 유튜브, sns, 콘텐츠 저작권 문제해결, 오승종

저작인격권

공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 내어 알림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①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모전에 제출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한 작품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주최측에서 공개한다면 공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드시 실명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자가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자가 있는 미술작품을 지하철 벽화로 제작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제목)을 변경하여 원작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신문사 측에 제출된 원고를 임의로 축약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한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대가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된다.

① 복제권

복제권은 인쇄·사진 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책을 복사하는 행위, 방송프로그램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내려받는 행위 등은 모두 복제권의 적용을 받는다.

유형물
형체가 있는 물건

② 공연권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청중에게 강연하거나, 음악 CD를 재생하여 공개하는 행위 등은 공연권의 적용을 받는다.

상연과 상영
무대에서 직접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연, 기계나 전자장치 등으로 녹화물을 재생해서 보여주는 것은 상영이다.

저작권 법률가

카페에서 트는 음악!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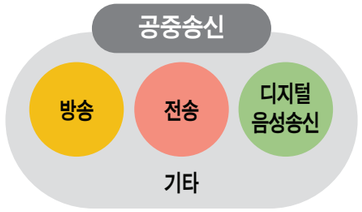
카페에 가면 멋진 분위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들려주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공연권을 가진다. 따라서 직접 구입한 CD나 음원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받은 음원이더라도 개인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헬스장, 대규모 점포 등에서 재생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다(단, 전통시장과 50m²(약15평)미만 소규모 영업장 제외).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음악 관련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 이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해 매장 음악 공연권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카페나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공연권 이용허락 신청에 대해 조사해보자!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웹캐스팅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의 생중계를 보내는 방식

③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파 방송, 유선 방송 등의 송신과 같은 방송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전송권, 웹캐스팅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음성송신권이 모두 공중송신권에 포함된다.



▲ 공중송신 개념도

④ 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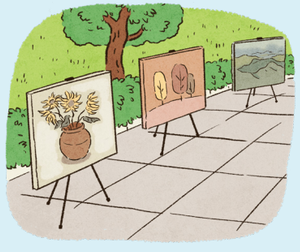
전시권은 저작권자가 원작품 또는 그것의 복제품을 일반인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진열할 권리를 의미한다. 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도 모두 전시권의 적용 대상이다.

⑤ 배포권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인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포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것의 재배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량의 음반을 구입한 후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배포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저작권 플러스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미술품! 항상 전시할 수 있을까?



도윤이는 화가가 된 나연이가 그린 그림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도윤이는 이 그림을 길거리에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도윤이가 그림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나연이가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도윤이는 전시가 허용된 미술관이나 개인적 공간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지만, 공원이나 길거리, 건축물의 외벽과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일반인들에게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 나연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링크도 저작권 침해? 임베디드 링크와 공중송신권



〈사례〉 A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제작한 사람으로 부터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 서버를 둔 B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A사는 B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이용자가 링크된 자료를 호출하기 위해 클릭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링크된 자료가 자동으로 재생되어 보이는 방식의 링크

위 사례처럼 링크를 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 위 사례에 대한 1심 법원과 2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330)〉

B사이트 운영자는 일반적인 링크(직접링크)가 아니라 각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하여 A방송사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및 대법원(2017다222757)〉



B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는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링크 행위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임베디드 링크 자체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일반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하도록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21년 9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하는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1.9.30 선고 2016도8040). 따라서 링크를 할 때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아닌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⑥ 대여권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여권의 대상은 상업용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만화책이나 영화DVD를 대여하는 것에는 대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2차적저작물
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웹툰을 영화로 제작하거나, 알려진 곡을 편곡하거나, 외국 도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원저작자의 권리와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부여되지만 원저작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한다.

저작권 세상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직업! 번역가와 편곡가



번역가는 외국어로 쓰인 문서나 보고서, 전문서적 등을 우리말로 옮기거나 우리말을 외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한다. 출판번역, 영상번역, 학술서적 등을 번역하는 전문 서류 번역 등 그 분야가 다양하며 높은 어학 수준과 문장력과 표현력뿐만 아니라 외국문화와 정서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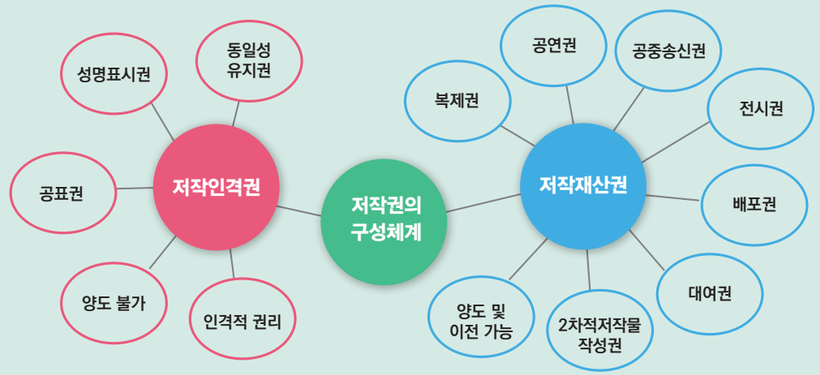
편곡가는 기존의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연주효과를 다르게 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한다. 화성 · 시창 · 청음 등 음악에 관련된 이론 및 실기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악기에 어울리는 악보를 만들어 연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악기의 특성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번역가와 편곡가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2차적저작물을 만든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번역한 책이나 편곡을 한 곡은 모두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며 이를 이용하려면 각각 번역가와 편곡가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생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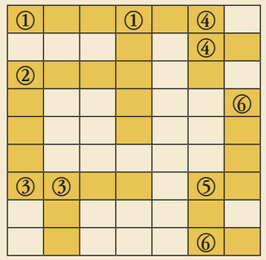
배운 내용 돌아보기

● 아래의 마인드맵을 통해 이번 차시에서 배운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함께 활동하기

● 다음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가로열쇠
①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② 이름은 같으나 사람은 다름, ○○○○
③ 자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제도
④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빌려줄 수 있는 권리, ○○권
⑤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진열할 권리, ○○권
⑥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세로열쇠
①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정신적 권리
② 원저작물이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될 권리, ○○○○○권
③ ○○○,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은 모두 공중송신권에 포함된다.
④ 높은 압력으로 물을 쏘는 장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전투할 때 입기 위해 만든 옷
⑥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권

● 가로열쇠와 세로열쇠를 모두 완성한 후 학급 클래스룸(구글) 퀴즈 과제에 답해 봅시다.